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4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1)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697,000원, 지방교육세 3,979,800원, 농어촌특별세 3,979,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소장에는 '김[redacted]농협협동조합'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가. 원고는 2013. 11. 29.경부터 [redacted]농협 농수축산물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 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redacted]시 [redacted]동 1440 일대를 예정부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장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예정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5. 9. 30. [redacted]시 [redacted]동 1436 등 총 10필지 합계 18,310㎡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redacted]시 걸포동 1436, 1437, 1440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 12.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59,697,000원, 지방교육세 3,979,800원, 농어촌특별세 3,979,8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문제로 2016. 12. 28.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유선으로 감면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처분 예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24.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기한 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용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 31.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가지번호 포함),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추징유예기간 만료일인 2016. 12. 30.까지 이 사건 판매장의 착공에 이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할 것을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도 2017. 1. 12.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접 한 바는 없다. 원고는 2017. 1. 24. 스스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피고가 그 과정에서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 또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도 위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검토

㈎ 원고는 피고가 2017.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 21.자 납부고지서나 처분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2017. 1. 24. 원고에게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안내행위 또는 자진납부신고서 및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05

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